

第112回(臨時會)

#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

第2號(附錄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## 目 次

1.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(案) 審査報告書 .....	1面
---	----

### 1.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## 審査報告書

2001. 6. 12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 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#### 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6월 19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6월 2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1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 
제1차(2001. 6. 27)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# 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)

##### 가. 개정이유

- 동기능 전환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##### 나. 주요골자

- 한시기구 · 정원 연장 승인에 따른 재정비
  - 부칙 제2조(한시기구)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

##### 다. 개정근거

- 동기능전환관련 구본청 한시기구 · 정원 연장승인 (서울시행정 13101-2625, 2001. 6. 15)

#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정 성 수)

#### 가. 개정 이유

-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과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도·감독하기 위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었고
-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 본청에 설치된 한시기구·정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(행정 13101-2625, 2001.6.18)하였으므로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자치행정과의 존속 기한을 1년 6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임

#### 나. 주요 골자

-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(한시기구)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개정

#### 다. 자치행정과 설치 경위

- 1999년 2월 5일 :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수립
- 2000년 3월 6일 :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 시달
- 2000년 7월 4일 : 동기능전환사업 전담 한시기구·정원(자치행정과) 승인
  - ┌ 증 : 1과, 5급 1명
  - └ 감 : 6급 이하 1명
- 2001년 6월 :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 및 내실있는 정착, 발전을 위해 한시기구 연장 운영 검토 및 승인

#### 라. 검토

-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동기능전환 사업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, 지역청소, 세무, 병사 등 전환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임
- 따라서 동기능전환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·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센터 운영을 포함한 기능전환을 총괄 지원하고, 업무를 지도·감독하는 전담조직의 존속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
-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 강구는 물론이고 전환된 업무의 명확한 처리지침 시달과 업무처리 부서 및 방법 등을 관련공무원들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업무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

#### 마.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

- 동의 지도감독
- 명칭 및 위치의 변경
- 구·동의 행정구역·통반 조직 및 운영

- 기부금품 및 잡부금품 모집
-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
- 취학 기타 학무
- 행정서사 지도감독
- 주민등록 및 인감
- 시민표창
- 반상회 운영
- 동장인사위원회 운영 및 동소속 공무원 인사내신
- 7급 이하 동직원 근무평정
-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관련 업무
-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통제
- 동청사 신축 및 재산관리
- 동사무소 내 주민문화복지센터에 관한 업무
-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업무
-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
- 건전 사회단체의 육성 지원
-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
- 새마을금고 운영 지도
- 환경정비 및 자연보호운동 계획수립 추진
- 생활민원처리 계획 및 평가
- 생활민원신고센터 운영
- 즉결생활민원 접수처리 및 통보
- 동별·부서별 중계민원 및 생활처리 지도·감독
- 계절별 일시업무 지원

4. 質疑 및 答辯 要旨

(질의자 : 현 수 한 위원, 정 태 순 위원, 김 정 대 위원)

(답변자 :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, 자치행정과장 이 수 결)

문) 동사무소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동정계가 지금도 총무과에 있습니까?

답) 현재 총무과에는 동정계가 없습니다.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

문) 청소 등 해당 분야별로 구청의 전문 부서들이 있는데, 굳이 또 자치행정과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?

답) 동기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.

문) 계속 한시기구로 두되, 단지 기한만 연장하는 것입니까?

답) 예, 그렇습니다.

5. 討 論 要 旨 : 없 음

6. 審 查 結 果 : 원안가결

7. 少數意見의 要旨 : 없 음

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